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직불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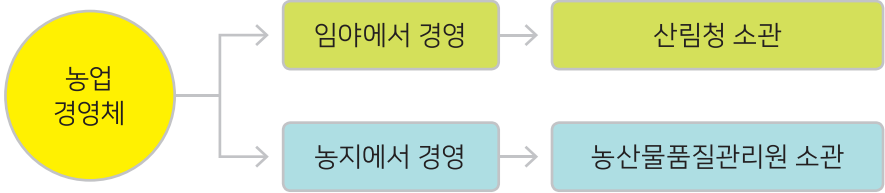
브로셔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0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③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④ 밤나무 : **삭제** 곱미터 이상~~
- ~~⑤ 잣나무 : **삭제** 곱미터 이상~~
-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참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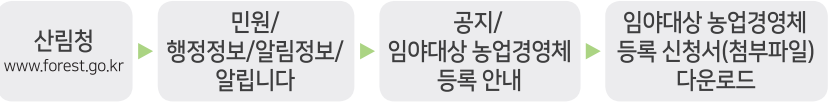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뽕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신청서 작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 준비

○ 농업인(임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숲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 등록 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방법

- 인근 주민센터, 농협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전국 4,400개)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탭 선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선택 후 출력

- 인터넷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모바일

정부24 앱 실행

통합검색창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검색

회원 또는 비회원
민원신청 발급

- 전국 3,700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26, 읍면동 3,473) **민원창구 방문**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유선**

▶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등록혜택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 가능
-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 간소화

구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야	관련기관				
국고 보조·용자금 지원대상 자격 증명	산림청	*임업직불금* 보조·용자 지원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 * 임야의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한정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연금보험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업 종사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농협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농업인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 (국세) *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협 또는 산림조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인력 등 기타지원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작물재배업) *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 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 경영체 관련 지원사업 (위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

0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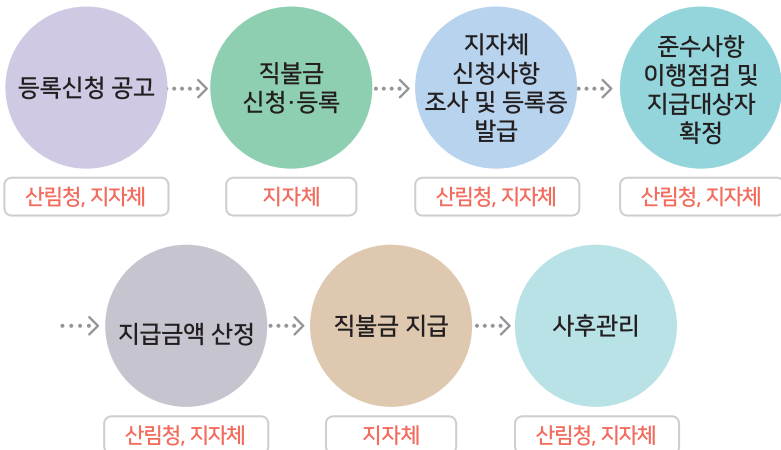
-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 이상)
- 육림업 직불금(본인이 직접 소유한 3ha 이상) :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사업추진절차

- 접수 및 지급 : 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 지급제의 산지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
 - * 2022년도 지급대상 산지는 별도 등록신청 공고에 따름



대상자 요건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①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②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③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소규모임가 직불금(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지역 거주
 - 임가내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및 임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0.1ha~3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육림업 직불금 - ①대상 산지를 소유(또는 임목등기)하고, ②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③10년 내 육림(조림, 숲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④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⑤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주업기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
 -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② 임산물 판매액 연간 1,600만원 이상
 - ③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연간 800만원 이상
 - ☞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 기준에 충족
- 육림업 직불금
 - ①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서 30ha 이상 경영(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
 - ② 주된 산지 시·군의 연접 시·군까지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 연 1,600만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
 - ☞ 2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육림업 직불금 주업 기준에 충족

▶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구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 관련·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개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입목분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최대 40%)

●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회원가입, 경영체번호로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수강
 -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 단, 임업인 교육 수강만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대표 : 1588-3249)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중 춘천시·원주시·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북부지방산림청	(우)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T. 033-738-6171~3 033-738-6175~6 F. 033-738-6179
	서울국유림관리소	(우)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T. 02-3299-4562 02-3299-4594~5 F. 02-965-0645
	수원국유림관리소	(우)166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T. 031-240-8926~8 F. 031-240-8942
	춘천국유림관리소	(우)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T. 033-240-9944,9962 F. 033-240-9949
	홍천국유림관리소	(우)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T. 033-240-5549,5546 F. 033-433-7715
강원도 중 강릉시·동해시· 태백시·속초시· 삼척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고성군·양양군	동부지방산림청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T. 033-640-8651~4 033-640-8660~3 033-640-8657~9 F. 033-640-865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창원시·김해시· 밀양시·양산시· 함안군·창녕군	남부지방산림청	(우)36663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T. 054-850-4101~13 054-850-7746 F. 054-842-7106
	영주국유림관리소	(우)36139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T. 054-630-4034 F. 054-632-4254
	영덕국유림관리소	(우)36409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별영3길 27	T. 054-730-8137,8140 F. 054-732-8230
	구미국유림관리소	(우)3936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307-2	T. 054-712-4126 F. 054-712-4154
	울진국유림관리소	(우)3632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T. 054-780-3956 F. 054-783-5144
	양산국유림관리소	(우)5063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T. 055-370-2734~7 F. 055-362-3799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지방산림청 등록 사무소	(우)32542 공주시 웅진동 270-29,1층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공주의료원 건너편)	T. 041-850-5300~2 F. 041-850-5304~5
	충주국유림관리소	(우)27478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 043-850-0335~7 F. 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우)2894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 043-540-7077~8 F. 043-540-7090
	단양국유림관리소	(우)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T. 043-420-0343~4 F. 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우)3312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 041-830-5038,45~48 F. 041-835-198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진주시·통영시· 사천시·거제시· 의령군·고성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 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지방산림청	(우)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T. 063-620-4655~9, 063-620-4666~68 F. 063-620-4649
	정읍국유림관리소	(우)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T. 063-570-1935,60~62 063-237-5036 F. 063-570-1939
	전주경영팀	(우)5513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T. 063-237-5036~8 F. 063-237-5039
	무주국유림관리소	(우)5552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T. 063-320-3649,51 F. 063-320-3660
	영암국유림관리소	(우)58431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 1	T. 061-470-5346,47,49 F. 061-472-2210
	광주경영팀	(우)61754 광주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T. 062-670-5422~4 F. 062-670-5419
	순천국유림관리소	(우)58026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180	T. 061-740-9370~3 061-740-9392~3 F. 061-740-9379
	함양국유림관리소	(우)5004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T. 055-960-2538~9 055-960-2547,2514 F. 055-960-2570
	진주경영팀	(우)5281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672번지 산림바이오 소재연구소 남부산림과학관 1층	T. 055-760-5015~9 F. 055-760-5084

{ 주요 문의 사항 }

01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하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 임업경영체등록/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오른쪽 상태창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03 임산물을 키우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04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실행 내역이 없이 임업직불금 신청할 수 있는지?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 명의로 받은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임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인가대로 사업 실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05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업'으로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육림업'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